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환급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세환급 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제13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단축(안 제14조)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비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 2년을 삭제하고,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6.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은”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평균세액증명서의 자율발급)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 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려는 자를 지정 및 발급하는 경우 지정 방법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으로 본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를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단서 또는 제6항”을 “단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세액증명서 등의 자율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액환급률표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평균세액증명) ① ~ ⑤ (생략)	제12조(평균세액증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u>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u> 등은 관세등의 환급 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⑥ ----- ----- <u>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u> 또는 수입세액분할 증명서(이하 “ <u>기초원재료납세 증명서등</u> ”이라 한다)는 ----- ----- -----.
⑦ (생략) <u><신설></u>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평균세액증명서의 자율발급)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u>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u>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 <u>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u> ”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 ----- ----- <u>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u> 을 ----- ----- ----- -----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제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2